

공시제도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 신속 자진시정 시 과태료 면제 가능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2024. 2. 9.)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중복되었던 공시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 7. 3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와 함께 관련 고시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개정 시행령 및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과태료 면제 기준 마련(시행령 별표 9. 다.)

이번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③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에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 공시기한 및 공시기간 변경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며, 휴일 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자는 사회·문화적 변화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장회사에 대한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시기간을 현행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과 관련된 내용 삭제

중복되는 공시사항 정비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2. 개정 시행령 및 고시의 시사점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통하여 ①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하여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② 공시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아울러, 신규 지정 기업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신규 지정에 따른 규제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④ 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순 계산 실수나 오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집단 공시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 Areas

공정거래

Contact

박성범 변호사

02-528-5840
sbpark@yulchon.com

박해식 변호사

02-528-5645
parkhs@yulchon.com

이석준 외국변호사

02-528-5448
leesj@yulchon.com

정세훈 외국변호사

02-528-5923
cschung@yulchon.com

윤정근 변호사

02-528-5179
jkyun@yulchon.com

황윤환 변호사

02-528-6464
yhhwang@yulchon.com

정성무 변호사

02-528-5724
smjung@yulchon.com

한승혁 변호사

02-528-5633
shhan@yulchon.com

김규현 변호사

02-528-5860
khkim@yulchon.com

류송 변호사

02-528-6473
sryu@yulchon.com

이승재 변호사

02-528-5590
sjlee@yulchon.com

최유미 변호사

02-528-6442
ymchoi@yulchon.com

강성일 변호사

02-528-5920
sikang@yulchon.com

이우열 변호사

02-528-5906
wylee@yulchon.com

박양진 변호사

02-528-6472
yjpark@yulchon.com

이충민 변호사

02-528-5750
cmlee@yulchon.com

김건웅 변호사

02-528-5963
kwkim@yulchon.com